경영유의사항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우리자산신탁㈜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1.

3. 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경영유의사항 3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대손충당금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

(가) 신탁계정대여금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 개선

□ 우리자산신탁㈜(이하 '회사')는 내규 「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지침」 등에 따라 고정 이하 신탁계정대여금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나, 외부감정평가 의뢰 없이 자체평가만을 수행하며, 자체평가 방법(추정치 산정)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,

○ 신탁계정대여금의 금액 중요성 및 이전 외부감정평가 수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정평가 등를 수행하고, 자체평가시 사용되는 추청지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

(나) 신탁계정대여금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

□ 회사는 대손충당금 집합평가시 PD(부도율) 등을 사용하여 충당금을

산정하고 있으나, 시공사의 신용등급만으로 PD값을 적용하는 등 PD값이 분양·공정 위험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,

○ 분양 위험, 시공사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PD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

⑵ 소송 충당부채 인식 관련 내부통제 강화

□ '24.9월말 책준기한이 도과한 신탁사업장은 2개로 소송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면밀한 소송 충당부채 인식 검토가 필요함에도, 구체적인 충당부채 인식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

○ 책임준공 소송 관련 충당부채가 적시에 인식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

⑶ 전산설비 및 데이터 백업 절차 보완

□ DLP*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으며, 백업대상 자료 중 일부가 복원되지 않는 등 백업 절차의 구축·운용이 미흡한바

* Data Loss Prevention(정보유출방지솔루션)

○ DLP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한편, 메일·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를 구축하고 보존기한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 백업 절차를 개선할 필요